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서 면 질 의 답 변 서

- 2016. 9. 29. 문화재청 국정감사 -

2016. 10.

순서

2016. 9. 29.(목) 문화재청 국정감사

김민기 의원	1
김병욱 의원	7
노응래 의원	13
도종환 의원	21
송기석 의원	27
신동근 의원	31
손혜원 의원	35
안민석 의원	39
유성엽 의원	45
유은혜 의원	51
전재수 의원	57
조승래 의원	65

< 목 차 >

<김 민 기 의원>

1. 이전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2. 이전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 이를 방지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3. 서울 종로구 소재 육의전박물관의 조속한 개관과 종로구 소재 어학원의 유물전시실이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조치사항을 보고할 것 3
4. 개인 및 사립학교, 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 국보와 보물에 대한 지진 등 재난 재해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 4
5. 국가지정문화재 고택 174건 중 10%는 빈집으로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5
6. 한국문화재재단이 재단법인 미르와 체결한 협약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계약체결 시 승인할 것인지 5
7. 경주 월성 마스터플랜, 전문가 및 문화재위원 의견 참고해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제대로 된 발굴, 복원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에 반영할 것. 8월 워크숍 이후 계획은? 6

<김 병 옥 의원>

1. 경주 신라왕경 마구잡이식 난개발 문제 심각 9
 - 1) 학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을 팍팍 밀어줄 때 성과를 확실히 내자는 조급증 때문에 천년 고도 경주를 망치려 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9
 - 2) 회의록을 보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유네스코 허락을 받아야만 하므로 종합 계획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9
 - 3) 경주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난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구를 유네스코가 우려할만한 방식으로 발굴 복원 개발하려는 데 대해서 문화재청이 책임있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을 건가? 10

2. 문화재청 지진 대응 관련	10
1) 이번 지진 피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된 지진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개선된 지진대비 문화재 보호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람.	10
2) 2013년에 시행한 「문화재지진재해 기초평가 연구」 이후 경계와 위험에 처한 문화재 34건 중 19건은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시행토록 맡겨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재청의 조치가 미흡한 것은 아닌 지 ?	11
3) 2014년부터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 업무를 문화재청에서 이관 받았고, 재해위험도 평가 등 재해 방지 연구를 주로 연구소에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과 관련한 문화재 안전 연구가 어떤 수준인가?	11
4)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안전방재 전담조직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12

<노 용 래 의원>

1. 첨성대 정밀실측도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원형복구 불가	15
1) 경주 첨성대 실측 훼손도평가(2009년) 등의 자료를 통해 원형복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잡석으로 채워져 있는 내부의 하단부는 실측이 되지 않고있어 결과적으로 정밀실측자료가 없는 것으로 결국 원형복구가 어려운 것이 아닌지?	15
2) 석조문화재 정밀실측 사업, 조속히 진행해주기 바람	15
2. 불국사 대웅전 정밀실측도서 관련	15
1) 불국사 대웅전의 1970년대 수리보고서는 원상복구 가능한 수준의 세부 정밀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음	15
2) 목조건물 정밀실측사업 대상 중 완료되지 않은 9건에 대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6
3. 지진에 대한 문화재 방재대책 관련	16
1) 2011년 문화재청은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성과’ 보도 시 내진목표 설정, 내진성능 평가방법, 내진보강방안 등의 ‘문화재 지진대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미수립한 사유는?	16

4. 「한글 1.0 패키지」 등록문화재 등록 말소 사유 및 향후 계획	17
5. 전국 문화재 27개소에 前 대통령 친필 현판이 걸려 있으며, 박정희 前 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21개소로 가장 많음. 문화재 복원과정에서 기존의 현판을 떼어낸 후 대통령 친필현판으로 교체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17
6. 서울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에서 궁 내 식재잔디나 수목을 위해 제초제 같은 농약을 사용할 때는 관람객이 없는 휴관일에 해야하는데 개관일에 특히 관람객 방문이 많은 주말에도 살충제, 제초제 등의 농약을 사용함. 문화재 전반에 걸쳐 농약 살포 현황을 조사하고 휴무일에만 안전관리를 준수해 사용하도록 해야 함	18
7. 침성대 하단 관상용 잔디가 침성대를 훼손 가속화시켜	19
1) 기단부 주변의 잔디가 미생물의 천이와 수분을 공급하여 생물학적 훼손을 가중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잔디 관리에 쓰이는 농약과 비료는 석재 표면과 결합하여 오염층을 형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19
2) 침성대 외 석조문화재 주변 잔디 식재 현황 및 개선책	19
8.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관련	19
1) 실제 설악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으로 전담관리하고 있어 관리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19
2) 오색케이블카 설치관련 지난해부터 문화재청 주관 산양조사를 1년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지금까지 산양조사결과는? 이미 조사한 자료와 문화재청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 결정을 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장의 입장은?	20
3) 현재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등산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케이블카와 비교했을 때 문화재 훼손과 문화재 가치증대 효과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지?	20

<도 종 환 의원>

1. 설악산 케이블카 조사 심의 과정, 투명하게 공개돼야	23
1)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투명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위원 구성과 진행 경과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소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과 관련 회의록(속기록 포함)을 제출	23

2) 지난 7월, 8월 심의 시 보류 결정을 내릴 때 잘못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24
2. 02~16년 발굴기관 미수금 66억 6천, 부실발굴로 이어져 조사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필요	24
3. 소실·훼손 우려가 큰 우리의 근대 문학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록 필요	25
4. 발굴조사 모니터링 용역을 전문성을 가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하도록 보완 대책 마련	25

<송 기 석 의원>

1. 문화재 관람료는 눈먼 돈? 충분한 사회적 합의 통해 대안 찾아야	29
1) 등산객에게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	29
2)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관람료 징수 세부규정이 없으며, 종단 내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29
3) 사찰 문화재관람료의 카드결제 등 사찰 재정 투명성 확보방안은?	30

<신 동 근 의원>

1.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는 고령화되고 보유자가 없거나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종목도 상당수가 있음. 더구나 이수자가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전반적으로 무형문화재 단절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 해결책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	33
2. 문화재 전기시설 부적합 판정 조치 부진	33
3.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소방자격증 미소지	34

<손 혜 원 의원>

1. 통영 소반장 추용호 공방 강제철거 관련	37
1) 문화재청이 나서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37
2. 문화재 감정건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감정위원 증원 및 처우개선이 요구되고 감정관실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7

<안 민 석 의원>

1. 지진에 피해 입은 문화재, 대책은 없는지? 41
 - 1)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은? 41
 - 2)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41
 - 3) 예산확보를 통해 문화재 정밀검사 및 복원을 하라 42
2. 경주 월성(신라 궁궐터) 발굴 복원 사업 42
 - 1) 마스터플랜은 어떠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모여 추진단을 구성하니 오히려 주도권 싸움만 하고 있다. 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42
 - 2) 이 중요한 복원 사업을 너무도 급하게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헤이조쿄보다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42
3. 해외문화재 환수와 관리 43
 - 1) 문정왕후 어보 환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향후 몰수가 진행된 과정부터는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43
 - 2)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가 몇 건이죠? 이 중에서 환수 우선순위를 매겨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무리하게 환수가 안되더라도 기관 간 MOU를 맺어 연구자들이 더욱 우리 역사에 대해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들도 실물을 볼 수 있도록 교환전시나 대여를 해오는 등의 방법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43

<유 성 엽 의원>

1. 식음료·공연부문 지속적인 적자 발생, 감사기관의 감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요청 47
 - 1) 한국의집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 요청 47
 - 2) 식음료·공연부문의 지속적인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7
2. 한국문화재단-재단법인 미르의 업무협약(MOU)관련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답변 행위에 대한 진상파악과 책임자 등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49

3. 승례문 단청 재복구 관련 요청	49
1) 단청 소재 개발과정에 실제 시공에 참여할 단청장인·기술자의 참여 또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49
2) 단청 소재 개발 이후 승례문 재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목표 등을 계획할 것을 요청	50
3) 개발 과정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	50

<유 은 혜 의원>

1.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문제 있어	53
1) 양양군에서 제출한 ‘문화재현상변경신청서’는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3
2) 이번 심의를 위해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네 개 분야의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심의가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3
3) 저번 국정감사때 제가 천연기념물 산양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조사가 진행중이죠? 다음 달이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 감사때 확인을 위해 최근 작성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4)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관리실태와 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원실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2. 신라 왕경 복원사업, 발상 바뀌야	55
1) 발굴과 정비·복원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나? 예산과 복원사업의 기간을 감안한다면 발굴을 무리하게 마무리 짓고 복원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55
2)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인데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개념이 충돌하고 있다.	55
3) 황룡사지의 경우 주변부의 종합발굴이 된 적이 없는데 종합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한다.	56
4) 월정교 누교는 이해하겠는데 양측의 문루는 대체 근거가 무엇인가?	56
5) 8월 31일 워크숍에서 지적사항에 대해 월성 내부 건물, 동궁과 월지 남편 건물지, 황룡사 9층 목탑 등의 장기 검토는 무엇인가? 논란을 피하자는 것 아닌가?	56

<전 재 수 의원>

1. 세계 최고추정 금속활자 “증도가자” 훼손 관련	59
2. 문화재청-방재시스템, 다양한 시스템 운용 고려 못해	59
1) 영상관제시스템은 조달청 관급자제 품목 중 특정 품목만 선정 유도, 전기화재 예측 시스템은 특정 시스템 원천적 배제...명백한 지침 위반, ‘문체부와 사업 유사성/ 중복성 때문에 타제품 사용 불가’ 터무니 없는 해명만 거듭	59
2) 문체부에서 이관 받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국고보조율이 당초 보다 후퇴하고 시스템 호환이 어려워 제도개선 또는 문체부 재이관 검토가 필요	60
3) 국가와 시·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진동 허용기준을 문화재관련 법령에 마련	60
3.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 확대 필요 관련	61
1) 돌봄사업 대상을 비지정 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등으로 확대해야	61
2) 돌봄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안정적 사업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돌봄사업의 조직과 예산확대 필요	61
3) 지진피해 이후 신속한 문화재 보수관리를 위해서라도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필요	62
4.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관리 부적정 관련	62
1)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용도 외 사용 및 관리·감독 부재	62
5.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확대 관련	63
1) 문화재청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각 지역에서 호응 및 선호도가 높았으며 향유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63

<조 승 래 의원>

1. 문화재청, 문화재 밀집지역 지진 대책 마련해야	67
1) 경주 지진 발생에 따라 100건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는데 해당 문화재의 복구 진 행 상황은 ?	67
2) 문화재청의 안전 매뉴얼을 검토 했는데, 문화재 특성이나 재해 유형에 따른 상황별 대안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보장하기 바람	67

3) 현재 문화재 보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급하다고 대충 보수해서는 안 될 것임. 정도를 지켜가며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복구 작업 해 주시기 바람.	67
2.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관련	68
1) 일본의 군함도 관련 강제징용 사실 적시를 위한 문화재청의 노력(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	68

김민기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임승경 연구관
연락처	042-481-4950

1. 이전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문화재청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에 의거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보존조치 유적이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존조치 유적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비용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보존조치유적이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전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 이를 방지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이전보존 조치된 문화재는 대부분 구제발굴시 사업허가의 조건으로 조치이기 때문에 민간이 소유자 및 관리단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원래의 목적대로 관리와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에 보존조치 유적의 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3. 서울 종로구 소재 육의전박물관의 조속한 개관과 종로구 소재 어학원의 유물전시실이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조치사항을 보고할 것

- 육의전박물관은 2016년 9월 26일 현지점검(문화재청과 서울시 동행)을 통해 이미 정상개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여 학예인력의 인건비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 종로구 소재 어학원의 유물전시실은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존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주변 유적전시관과 연계된 답사 프로그램 등을 개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이명선 사무관, / 송인현 사무관
연락처	042-481-4821/4920

4. 개인 및 사립학교, 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 국보와 보물에 대한 지진 등 재난재해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

- 우리 청은 국보·보물 중요문화재의 국·공유, 사유 구분 없이 재난재해 방지 대책으로 방재시스템(소방, 방범) 구축과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설치(146건, 100%) 완료하였으며,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운영, 방염제 도포 등을 통한 재난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 또한 재난재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점검(정기 년4회, 특별 년2회)과 재난대응훈련(년2회) 실시 및 산불피해예방대책(년2회), 풍수해대응계획(년2회)을 수립·시행하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산불, 풍수해, 지진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지자체공무원 대상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을 위탁·시행(년1회)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보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정기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시 보관장소, 보존현황, 보존시설, 소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개인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공립박물관 등에 위탁 보관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지진에 대비하여 전시 진열 중인 문화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다량 유물 소장기관에 대한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시진열장 및 전시기법을 지진에 대비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전문가·기관과 협의하여 “지진 대비 전시기법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당자	권점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4882

5. 국가지정문화재 고택 174건 중 10%는 빈집으로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고택은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10%(22건) 정도의 고택이 빈집으로 있으며, 빈집에 대한 관리는 전통가옥 경상관리 사업을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위탁하여 주3일(1일 8시간) 경상관리인이 근무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상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당자	조주성 사무관
연락처	042-481-4741

6. 한국문화재재단이 재단법인 미르와 체결한 협약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계약체결 시 승인할 것인지

- 한국문화재재단과 미르재단 간 체결한 MOU는 한식의 고급화·세계화 및 한국의집 중장기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체결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미르재단이 한국문화재재단에 취선관 임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우리청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승인 요청하면,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신라왕경사업추진단
담당자	윤진영 사무관
연락처	054-777-6719

7. 경주 월성 마스터플랜, 전문가 및 문화재위원 의견 참고해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제대로 된 발굴, 복원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에 반영할 것. 8월 워크숍 이후 계획은?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안)’에는 세부사업 각 단계마다 문화재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신라왕경사업추진단 자문위원회, 각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고고학적·역사학적 고증을 받아 추진토록 반영하겠습니다.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안)’은 앞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추진단, 경주연구소, 경주시, 용역기관 /10.~11월)
 - 문화재위원(합동분과) 대상 2차 워크숍 개최(‘16. 10월 예정)
 - 문화재위원회(합동분과) 보고(11월 예정, *2차 워크숍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김 병 옥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신라왕경사업추진단
담당자	윤진영 사무관 권택장 연구관 임경석 사무관
연락처	054-777-6719 054-777-6726 054-777-6730

1. 경주 신라왕경 마구잡이식 난개발 문제 심각

- 1) 학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을 팍팍 밀어줄 때 성과를 확실히 내자는 조급증 때문에 천년 고도 경주를 망치려 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세부사업 각 단계마다 문화재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신라왕경사업추진단 자문위원회, 각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고고학적·역사학적 고증을 받아 차근차근 추진할 것입니다.

- 2) 회의록을 보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유네스코 허락을 받아야만 하므로 종합계획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 종합기본계획은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사적-건축-세계유산)에 보고('16.5.11.)하였으나, ▲ 과도한 복원은 지양하고, 발굴 등 충분한 역사·고고학적 고증을 거친 정비·복원 계획 수립 ▲ 세계유산구역과 완충구역에 대한 정비·복원 등은 세계유산 규정에 따르고, 이에 대한 검토내용 보완 등을 사유로 미접수되었습니다.
- 앞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및 문화재위원(합동분과) 대상 2차 워크숍 개최('16.10월 예정), 문화재위원회(합동분과) 보고(11월 예정, 2차 워크숍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등을 거치고, 또 세부사업별로 필요한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경주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난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구를 유네스코가 우려할만한 방식으로
발굴 복원 개발하려는 데 대해서 문화재청이 책임있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을 건가?

- 경주시가 사업주체이기는 하나 세부사업 각 단계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우리 청은 문화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신라왕경사업추진단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진행할 것이므로 경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현재 신라왕경사업추진단에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문화재청과 경주시, 문화재연구소가 매월 1번씩 모여 집행점검회의 등을 하고 있으므로 우려하지 않도록 충실히 점검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김영호 사무관, 이명선 사무관
연락처	042-481-4972, 4821

2. 문화재청 지진 대응 관련

1) 이번 지진 피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된 지진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개선된 지진대비 문화재 보호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람.

- 9.12. 경주지진 후 문화재청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대책 및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먼저,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 피해 신고 및 보고, 유관기관 협조의무 등의 조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다음으로 문화재 맞춤형 지진위험지도 제작, 건조물 문화재 내진진단 프로세스 구축 등 지진에 대비한 R&D연구를 지속 실시하여 개별 문화재별 지진위험도를 모니터링 하여 사전 조치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난예방, 현장대응, 연구기능을 갖춘 ‘(가칭)문화재방재종합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재 재난 발생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에 시행한 「문화재지진재해 기초평가 연구」 이후 경계와 위험에 처한 문화재 34건 중 19건은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시행토록 맡겨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재청의 조치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 지자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19건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정기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담당자	조상순 연구관
연락처	042-860-9216

3) 2014년부터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 업무를 문화재청에서 이관 받았고, 재해위험도 평가 등 재해 방지 연구를 주로 연구소에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과 관련한 문화재 안전 연구가 어떤 수준인가?

- 연구소에 안전방재(재해방지) 연구팀이 별도로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

- 국립문화재연구소(건축문화재연구실)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연구보고서)

- 「건축문화재 지진재해 대응 구조기준 연구」(‘11)
- 「건축문화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관리 사례연구」(‘12)
- 「건축문화재 안전관리 및 재해대응 구조기준 연구」(‘13~‘14)
- 「역사도시(서울,수원,경주,부여) 지진·홍수 재해위험도 평가 연구(5개년)」(‘09~‘13)

- 현재 건축문화재연구실에 중요 건축문화재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의 핵심분야에 대한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구팀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는데,
지진 등 재해로부터 문화재 안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한 문화재 안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문화재 안전방재를 전담으로 연구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지진을 비롯한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5~2016.10 / 연구관 1, 연구사 4 확보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김영호 사무관, 이명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72, 4821

4)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안전방재 전담조직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재난예방, 현장대응 및 연구기능을 총괄하는 ‘(가칭)문화재방재종합센터’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 응 래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안 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4915

1. 첨성대 정밀실측도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원형복구 불가

1) 경주 첨성대 실측 훼손도평가(2009년) 등의 자료를 통해 원형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잡석으로 채워져 있는 내부의 하단부는 실측이 되지 않고있어 결과적으로 정밀실측자료가 없는 것으로 결국 원형복구가 어려운 것이 아닌지?

- 문화재청은 그간 정밀실측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일부 문화재는 해체보수과정에서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첨성대의 경우 2009년 실측훼손도 평가, 2010~2011년 안전관리방안연구 결과로 정밀실측자료가 이미 확보 되어 있어 원형복구에 문제가 없습니다.
- 지적하신 잡석으로 채워져 있는 첨성대 내부 하부는 실측이 여의치 않으나, 실측을 위해 내부 잡석을 비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석조문화재 정밀실측 사업, 조속히 진행해 주기 바람

- 정밀실측사업은 문화재청 자체사업과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을 통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정밀실측이 완료되지 않은 석조문화재 446건 중 47건은 2016~2018년에 실측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나머지 석조문화재와 추가 지정되는 문화재는 국고보조사업 등을 통해 실측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 불국사 대웅전 정밀실측도서 관련

1) 불국사 대웅전의 1970년대 수리보고서는 원상복구 가능한 수준의 세부 정밀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음

- 경주 불국사 대웅전의 경우 1973년 보수공사 시 작성된 수리보고서와 2012년 작성된 대웅전 보수를 위한 설계도서가 있어 수리·복구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좀더 세부적인 정밀실측을 위하여 이미 2015년도 보수정비사업비를 경주시에 교부하여 정밀실측도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목조건물 정밀실측사업 대상 중 완료되지 않은 9건에 대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밀실측이 완료되지 않은 목조문화재 9건 중 불국사 대웅전을 포함한 4건은 2016~2018년에 실측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나머지 목조문화재와 추가 지정되는 문화재는 국고보조사업 등을 통해 실측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김영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4972

3. 지진에 대한 문화재 방재대책 관련

1) 2011년 문화재청은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성과’ 보도 시 내진목표 설정, 내진성능 평가방법, 내진보강방안 등의 ‘문화재 지진대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미수립한 사유는?

- 그간 문화재 지진대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내진보강방안, 내진성능 평가방법, 내진목표 설정 등 기초 R&D 연구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다.
- 향후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문화재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R&D 기초연구와 방재관련 전문인력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당자	임재범 사무관
연락처	042-481-4894

4. 「한글 1.0 패키지」 등록문화재 등록 말소 사유 및 향후 계획

- 등록문화재로 등록('13. 8.27)된 「한글 1.0 패키지」의 진위여부 문제 제기로 사실관계 조사·확인을 거친 결과, 한글 1.0 패키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말소 하였습니다.
- 한글 1.0 버전 출시('89.4) 후 1.2 버전이 바로 출시('89.11)되어 널리 확산됨에 따라, 개발자 및 소유자 측도 1.0버전으로 잘못 알고 있었으며 한글 1.0 버전을 찾기 위해 한글 박물관에서 공개공모('15.1월)까지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 등록 검토 과정을 보다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문화재 등록 검토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당자	이동순 사무관
연락처	042-481-4841

5. 전국 문화재 27개소에 前 대통령 친필 현판이 걸려 있으며, 박정희 前 대통령의 친필현판이 21개소로 가장 많음. 문화재 복원과정에서 기존의 현판을 떼어낸 후 대통령 친필현판으로 교체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 현판은 건물의 기능과 공간에 대한 함축적 의미와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유물로서, 현판의 글씨는 전통시대에는 군주를 포함하여, 당대의 저명한 석학·대신·명필 등이 써왔으며 근·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 어필현판첩(1885년 추정, 조선 고종이 쓴 현판 ‘향원정’, 장안당’ 등 수록)
 - * 궁궐의 현판과 주련(2007, 문화재청)
- 역대 대통령 친필 현판을 조사한 결과, 현판이 걸린 건물은 대부분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이며, 당시 신축건물에 맞게 제작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들 현판은, 전통시대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현판문화의 특성이 계승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설치된 지 길게는 60년이상 경과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당자	김명준 사무관
연락처	042-481-4702

6. 서울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에서 궁 내 식재잔디나 수목을 위해 제초제 같은 농약을 사용할 때는 관람객이 없는 휴관일에 해야하는데 개관일에 특히 관람객 방문이 많은 주말에도 살충제, 제초제 등의 농약을 사용함. 문화재 전반에 걸쳐 농약 살포 현황을 조사하고 휴무일에만 안전관리를 준수해 사용하도록 해야 함

- 고궁은 고궁 경관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각종 조경수목과 잔디 등 식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고궁내 농약 사용은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정식등록된 농약을 선정하여 가능한 한 고궁의 휴공일에 약제를 살포하고 있으나 소규모 약제살포와 갑자기 발생한 해충 등으로 긴급방제가 불가피할 때는 고궁 관람일에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고궁 관람일에 농약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이전 또는 관람 시간이 완료된 이후에 농약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 향후 농약사용은 휴관일에만 사용하여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득이하게 긴급한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시에는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여 소량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김석희 사무관
연락처	042-481-4914

7. 침성대 하단 관상용 잔디가 침성대를 훼손 가속화시켜

- 1) 기반부 주변의 잔디가 미생물의 천이와 수분을 공급하여 생물학적 훼손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잔디 관리에 쓰이는 농약과 비료는 석재 표면과 결합하여 오염층을 형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침성대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하여 10.10.(월) 관계전문가의 자문회의를 시행할 계획이며,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침성대의 지반 현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 침성대 외 석조문화재 주변 잔디 식재 현황 및 개선책

- 전체 석조문화재 대비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비율은 11%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정기조사 기준)

구분	탑	비	석등	승탑	당간	기타	합계
석조문화재 수량	189	31	23	57	28	243	571
잔디식재	38	2	5	4	6	10	65(11%)

- 석조문화재 주변 정비(잔디 제거)는 우리 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당자	조성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86

8.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관련

- 1) 실제 설악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으로 전담관리하고 있어 관리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 지정 가치 및 목적이 서로 상이하여 부처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오색케이블카 설치관련 지난해부터 문화재청 주관 산양조사를 1년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지금까지 산양조사 결과는? 이미 조사한 자료와 문화재청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 결정을 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장의 입장은?

- 문화재청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산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생태환경,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3) 현재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등산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케이블카와 비교했을 때 문화재 훼손과 문화재 가치증대 효과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지?

-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생태환경,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 종 환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당자	조성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86

1. 설악산 케이블카 조사 심의 과정, 투명하게 공개돼야

- 1)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투명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위원 구성과 진행 경과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소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과 관련 회의록(속기록 포함)을 제출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문화재위원을 제외한 관계전문가 및 문화재위원회 속기록은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7056호) 제9조의2 제2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관련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비공개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동물	문화재위원	김용준	포유류
	문화재위원	이두표	조류
	○○대학교 교수	○○○	조류·포유류
	○○대학교 교수	○○○	야생동물
	○○대학교 교수	○○○	동물생태
식물	문화재위원	전영우	산림학
	○○대학교 교수	○○○	식물분류/생태
	○○대학교 교수	○○○	식물분류
경관	문화재위원	안계복	경관분석
	문화재위원	이상석	조경설계
	○○대학교 교수	○○○	경관관리
	○○대학교 교수	○○○	조경계획
지질	문화재위원	우경식	지질학
	문화재위원	황재하	지질학
	○○대학교 교수	○○○	지질학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지난 7월, 8월 심의 시 보류 결정을 내릴 때 잘못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 지난 7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보류된 것은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후 재심의를 위한 것이며, 8월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양양군에 제출한 현상변경 신청 서류와 문화재청에서 자체 조사 중인 산양 조사 결과 등을 소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임승경 연구관
연락처	042-481-4950

2. 02~16년 발굴기관 미수금 66억 6천, 부실발굴로 이어져 조사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필요

- 조사비용 미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우리 청에서는 현재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의거 조사기관 미수금 방지 대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현재,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서 조사비용 미수금 예방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 표준도급계약 규칙(2015. 2. 1.)」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규칙에 선금금, 기성금, 용역대금지급보증(보증서 교부 등), 지체상금 등을 명시한 표준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미수금 발생 시 미수 채권 실현 방법(소멸시효 중단, 재산명시 신청, 강제집행 절차,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유치권 항변) 등을 협회 총회 시 안내하였습니다.
- 우리 청에서도 문화재 협업포털에 발굴조사 허가 신청 시,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조사비용 미수금 발생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당자	임재범 사무관
연락처	042-481-4894

3. 소실·훼손 우려가 큰 우리의 근대 문학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록 필요

- 등록문화재는 다양한 분야의 등록을 위하여 근대문화유산 동산분야 목록화 조사 중장기 계획에 따른 목록화 조사 및 등록 검토와 소유자의 등록 신청에 따른 등록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실·훼손 우려가 큰 근대 문학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향후 소유자의 동의 등 등록문화재 절차를 통한 등록문화재 등록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 「그날이 오면」 유품은 소유자 측과 협의 후 관리 등을 위하여 국내 반입, 소유자 동의 등을 통한 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당자	길태현 사무관
연락처	042-481-4947

4. 발굴조사 모니터링 용역을 전문성을 가진 국립문화재 연구소가 조사하도록 보완 대책 마련

- 발굴현장 모니터링은 발굴조사의 품질제고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으로 전문성·공신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 조사분야(유형별·전공별)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로 이해관계자는 배제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 향후 모니터링 점검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종합분석을 통해 국립문화재 연구소의 참여 등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 기 석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당자	박판용 사무관
연락처	042-481-4811

1. 문화재 관람료는 눈먼 돈? 충분한 사회적 합의 통해 대안 찾아야

1) 등산객에게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

- 국립공원 내 사찰 등의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49조는 문화재의 공개와 이에 따른 문화재관람료의 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람료는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의무화(문화재보호법 제48조)하고, 문화재 공개에 따른 소유자·관리자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및 문화재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상 경비 보상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등산객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는 문화재 관람경로와 등산로가 함께 이용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등산로가 게재되어 있어 등산객의 의사에 따라 관람료 또는 등산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은사 대법원 판결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통행방해’에 대한 판결임)
- 이러한 문제로 우리 청에서는 금년도 4월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심층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관람료 징수 세부규정이 없으며, 종단 내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전(‘95.12.29)에는 “관람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개정되었습니다.

- 그 후 2008.2월 지병문의원 대표발의로 “관람료 금액을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이를 규제강화로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시 문화관광위원회 판단으로 국회 번안동의 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조계종에서는 종단 자체종규인 「사찰문화재보존관리법」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사찰 문화재관람료의 카드결제 등 사찰 재정 투명성 확보방안은?

- 카드결제와 관련된 사항은 '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으로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비영리기관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국세청 소관임). 다만, 조계종 내부적으로 카드결제를 권장하여 62개 사찰중 25개 사찰(40%)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및 사용 내역 공개는 현행 법령상 각 사찰의 자유재량에 속한 사항이나, 2015.4월경 조계종에서 카드가맹점 설치와 연 예산 30억원 이상인 사찰의 재정을 공개하고 차츰 확대하겠다는 발표(보도자료)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 동 근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유철 사무관
연락처	042-481-4966

1.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는 고령화되고 보유자가 없거나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종목도 상당수가 있음. 더구나 이수자가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전반적으로 무형문화재 단절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고령의 보유자 종목은 적기 보유자 충원 및 단체종목 전환 등 종목 특성에 맞는 보유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예우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매년 전승자 충원계획 수립 시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부재 종목을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전 종목에 대한 주기적(매 5년) 검토를 통해 전승자의 적기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수자들의 전승의욕 고취 및 전승 활성화를 위해 이수자 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이수자 지원사업 : 이수자턴(예능),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사업(공예)
- 그리고 전승환경 변화에 따라 전승이 취약해지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취약종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전승이 어려운 무형문화재는 긴급보호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집중 보육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이명선 사무관
연락처	042-481-4821

2. 문화재 전기시설 부적합 판정 조치 부진

- 전기시설 안전점검 결과 13년도 40건, 14년도 61건, 15년도 87건으로 총 188건의 부적합 판정 대상 중 176건이 조치되고 12건이 미조치 되었습니다.
- 미조치된 12건에 대하여는 금년 내에 예산투입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3.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소방자격증 미소지

- 문화재 안전경비원 채용인원 중 소방자격 소지자는 458명 중 329명(72%)이며, 자격 미소지자 129명은 실기시험 통과자 43명(9%)과 안전경비원으로 소방전문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장기 근무자 86명(19%)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향후 의원님의 대안 제시에 따라 안전경비원의 자격소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소방설비 운용 및 초동대처에 의한 현장대응 능력 향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성 역량강화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당자	김성도 서기관
연락처	042-481-4884

1. 통영 소반장 추용호 공방 강제철거 관련

1) 문화재청이 나서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공방의 보존 방안에 대한 소반장 기능 보유자와 통영시의 이견으로 등록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통영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방의 보존·활용과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김준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4923

2. 문화재 감정건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감정위원 증원 및 처우개선이 요구되고 감정관실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매년 상근감정위원 증원 및 등급상향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나 '11년 이후 반영되지 않고 있어 예산확보를 통한 비상근위원만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행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상근감정위원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감정관실 확대는 추후 국제공항 개항 등 수요발생 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민 석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김영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4972

1. 지진에 피해 입은 문화재, 대책은 없는지?

1)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은?

- 9.12. 경주지진 후 문화재청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대책 및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먼저,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 피해 신고 및 보고, 유관기관 협조 의무 등의 조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다음으로 문화재 맞춤형 지진위험지도 제작, 건조물 문화재 내진진단 프로세스 구축 등 지진에 대비한 R&D연구를 지속 실시하여 개별 문화재별 지진위험도를 모니터링 하여 사전 조치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난예방, 현장대응, 연구기능을 갖춘 ‘(가칭)문화재방재종합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재 재난 발생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 우리청은 경주지진 발생시 경주연구소로 하여금 문화재 피해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긴급보수비 즉시 지원, 직영보수단 등 250여명의 인력 긴급 투입 등 응급조치를 한 바 있으나, 현장대응 조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를 계기로 재난예방, 현장대응 및 연구기능을 총괄하는 ‘(가칭)문화재방재종합센터’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당자	안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4915

3) 예산확보를 통해 문화재 정밀검사 및 복원을 하라

- 금번 경주 지진으로 인해 피해 입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응급복구, 긴급예산 지원, 지속적 모니터링 등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문화재청 자체사업과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및 문화재 정기조사 등을 통한 문화재의 안전성 정밀검사와 추가적인 실측작업으로 재해 등에 의한 문화재 훼손시 보수·복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신라왕경사업추진단
담당자	윤진영 사무관, 권택장 연구관, 임경석 사무관
연락처	054-777-6719, 6726, 6730

2. 경주 월성(신라 궁궐터) 발굴 복원 사업

- 1) 마스터플랜은 어떠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모여 추진단을 구성하니 오히려 주도권 싸움만 하고 있다. 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 추진단 설립 초기에는 참여기관간에 혼선이 일부 있었으나, 현재는 문화재청과 경주시, 문화재연구소가 매월 1번씩 모여 집행점검회의 등을 하고 수시로 담당자가 연락하며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경주시가 사업주체이기는 하나 세부사업 각 단계마다 최종적으로 우리 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또 문화재연구소 등도 상급기관인 문화재청 신라왕경사업추진단의 지시에 따르고 있으므로 신라왕경사업추진단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2) 이 중요한 복원 사업을 너무도 급하게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헤이조쿄보다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세부사업 각 단계마다 문화재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신라왕경사업추진단 자문위원회, 각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고고학적·역사학적 고증을 받아서 차근차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담당자	유재걸 사무관
연락처	042-481-4734

3. 해외문화재 환수와 관리

1) 문정왕후 어보 환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향후 물수가 진행된 과정부터는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 문정왕후어보는 2013.5월부터 문화재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간의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형사몰수제도만 운용)와는 달리 3가지 몰수제도(형사몰수, 민사몰수(행정몰수), 민사몰수(사법몰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정왕후어보의 경우 현종어보와 함께 '13.9.27 압수된 이후 당초에는 피압수자 처벌을 위해 형사몰수를 우선 추진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이후, 우리 청과 이민관세청(ICE) 간의 「한미 문화재 환수협력 양해각서」 체결('14.7월/워싱턴DC)과 우리 청의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의 현지 실사('14.7월/LA)를 계기로 조속한 수사완료를 요청하는 우리 청의 요청을 감안하여 미국 측에서도 형사몰수 보다는 민사몰수(행정몰수, 행정몰수)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 2월부터 미국 법무부에서 민사몰수(사법몰수)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자료준비 등 실무작업이 계속 추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4년 7월 체결된 「한미 문화재 환수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 청이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미수사공조와 관련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가 몇 건이죠? 이 중에서 환수 우선순위를 매겨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무리하게 환수가 안되더라도 기관 간 MOU를 맺어 연구자들이 더욱 우리 역사에 대해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들도 실물을 볼 수 있도록 교환전시나 대여를 해오는 등의 방법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 국외문화재는 20개국 582개처에 164,454점이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외문화재 환수는 문화재 반출 양태에 따라 1) 전시(戰時) 이전된 문화재, 2) 식민지 반출 문화재, 3) 도난 또는 불법 반출 문화재, 4) 국가 분리에 따른 문화재 승계 등으로 구분되며 각 양태별로 문화재 환수에 적용되는 법리나 방법, 절차, 환수 환경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기보다는 사안별(case by case)로 환수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 상 국	환수 추진	문화재명	소장자	비 고
일 본	문화재청-민간단체 협력	오구라컬렉션	도쿄국립박물관	문화재제자리찾기
		양산부부총유물	도쿄국립박물관	양산유물찾기운동본부
		이천오층석탑	오쿠라 집고관 (도쿄市)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연지사종	조구신사 (쓰루가市)	연지사종환수위원회
	문화재청-자치단체 협력	고양 육각정	모미지다니공원 (이와쿠니市)	고양 문화원
미 국	한미 수사공조 (문화재청-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문정왕후어보	LA카운티박물관 (압수 : '13.9.2.27)	몰수절차 진행 중
		현종어보	美 개인 (압수 : '13.9.2.27)	몰수절차 진행 중
	문화재청 - 외국 소장기관 협상	송광사 오불도	미국 개인 / 포틀랜드박물관 기탁	2016.5.17 반환 합의 / 2017년 상반기 중 환수 예정

-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문화재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 소장기관과 MOU를 체결, 연구자들이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우리 청에서는 프랑스 소재 한국문화재를 대상으로 지난 2016.9.23 국립중앙도서관, 청주고인쇄박물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에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실태조사나 영인본 제작, 대여 전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발송하는 등 총괄 기능(컨트롤 타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 성 엽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청 활용정책과/한국문화재단
담당자	조주성 사무관/홍혜진팀장
연락처	042-481-4741/02-3011-2131

1. 식음료·공연부문 지속적인 적자 발생, 감사기관의 감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요청

1) 한국의집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 요청

- 한국문화재단 한국의집 주요사업 중 식음료·공연부문의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문화재단 차원에서도 한국의집 운영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문화재단은 동 재단의 부속기관인 한국의집 운영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의집 운영활성화 연구용역’을 2015. 9. 1. ~ 10. 31.까지 한국생산성 본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결과를 참고하여 한국의집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방법 등에 대해 한국의집 지도·감독기관인 한국문화재단(감사실)과 ‘한국의집 운영활성화 연구용역’에 참여했고 생산성 향상 방법론과 경영컨설팅 경험이 많은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주요사업 추진방향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한국문화재단
담당자	홍혜진팀장
연락처	02-3011-2131

2) 식음료·공연부문의 지속적인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의집 식음료 부문 이용객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인이 2013년 대비 2015년 약 11%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비즈니스 고객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 이용객이 엔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 공연 또한 주요 관람객인 비즈니스 고객과 일본 이용객의 감소, 전통예술 공연의 가격경쟁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인 확대를 위한 한국의집 서비스·환경 개선 및 메뉴 개발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특정 국가 관광객 중심의 마케팅에서 탈피하여 다변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2015년 10월에 실시한 한국의집 운영 활성화 연구 용역(한국생산성본부) 결과를 참고하여 한국의집의 중장기적 발전을 목표로 한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전개하여 적자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의집 운영활성화 연구용역 ＞

- 기 간 : 2015. 9. 1~10. 31.(2개월)
- 수행업체 : 한국생산성본부
- 주요내용
 - 1) 고품격 전통음식 활성화
 - 전통음식 명품 메뉴개발
 - 전통음식 R&D 기능 강화
 - 전통음식 전문교육 개발 및 시행
 - 전통음식 개별 공간 조성
 - 2) 전통예술공연 운영 효율성 제고
 - 전통예술공연 브랜드 명품공연 기획
 - 전통예술공연 운영방식 차별화
 - 3) 고품격 전통혼례 차별화
 - 전통혼례 의복 등 고품격화 추진
 - 4)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차별화
 - 5) 사업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 식음료부문의 적자 개선을 위하여 특정국가 관광객 중심의 마케팅에서 탈피하여 구미, 중국 등으로 마케팅 대상국을 확대하고, 비중이 높아지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내국인 이용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오·만찬 및 일품 메뉴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홍보마케팅 업체를 활용, 한국의집 소개영상 및 프레스키트 제작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연부문의 적자개선을 위해서 1981년 한국의집 민속극장 개관이후 35년간 공연된 옴니버스 형태의 전통예술 공연을 홀로그램 등 첨단공연기술을 가미한 한국적 스토리텔링형태의 공연으로 전환하여 전통예술공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력 일간지 기획기사 등 전통예술공연 홍보마케팅을 확대하고, 공연 회당 관람객 제고 등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통해 수지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청 활용정책과/한국문화재단
담당자	조주성 사무관/홍혜진팀장
연락처	042-481-4741/02-3011-2131

2. 한국문화재단-재단법인 미르의 업무협약(MOU)관련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답변 행위에 대한 진상파악과 책임자 등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 한국문화재단과 재단법인 미르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다수 의원님들께서 한국문화재단에 요구한 자료의 일부 거부 및 허위답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유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 후, 관련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향후 한국문화재단에서 생산된 행정자료 등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자료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과/국립문화재연구소
담당자	이성희사무관/박종서연구관
연락처	042-481-4870/042-860-9342

3. 숭례문 단청 재복구 관련 요청

- 1) 단청 소재 개발과정에 실제 시공에 참여할 단청장인·기술자의 참여 또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전통 단청 소재 개발 연구과정에서 다수의 단청 장인 및 단청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연구진의 형태로 관련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나,
 - 전통 단청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실제 시공에 참여할 단청장인 또는 기술자의 전통 단청 소재와 시공기술에 대한 능력 등을 검증하고 참여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향후 단청장인, 단청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 단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통단청 소재와 관련한 공개·시연,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 단청 소재 개발 이후 승례문 재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목표 등을 계획할 것을 요청

- 승례문 단청 재복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및 품질평가 연구('14~'18년) 등을 거쳐 단청 재복구 공사('18년 이후/약 31억원)를 계획·추진하고 있으나,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및 품질평가 연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단청 재복구 일정을 계획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추후 단청 관련 연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단청기법, 단청안료 생산공급량, 전통기술 인력 교육 및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통 단청 시방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단청 재복구 공사 일정을 수립하겠습니다.
 - 또한 승례문 단청 재복구에는 공사계약된 업체 소속 기술자·기능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 통상 단청공사의 경우는 가설공사 및 가림막설치 → 부재 면담기 → 단청 → 가설 비계해체 → 공사준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3) 개발 과정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

- 전통 단청 소재 개발 연구의 기초조사 단계에서 국내·외 민간업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료 조사 실시 등 일부 민간참여가 있었으며, 향후 연구과정에도 민간참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은 혜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당자	조성래 사무관
연락처	042-481-4986

1.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문제 있어

1) 양양군에서 제출한 ‘문화재현상변경신청서’는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재청은 양양군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언론에서의 지적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자료 외에도 자체 산양조사결과 분석, 경관 시뮬레이션, 유사 케이블카 사례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이번 심의를 위해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네 개 분야의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심의가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문화재위원을 제외한 관계전문가 및 문화재위원회 속기록은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7056호) 제9조의2 제2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관련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비공개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동물	문화재위원	김용준	포유류
	문화재위원	이두표	조류
	○○대학교 교수	○○○	조류·포유류
	○○대학교 교수	○○○	야생동물
	○○대학교 교수	○○○	동물생태
식물	문화재위원	전영우	산림학
	○○대학교 교수	○○○	식물분류/생태
	○○대학교 교수	○○○	식물분류
경관	문화재위원	안계복	경관분석
	문화재위원	이상석	조경설계
	○○대학교 교수	○○○	경관관리
	○○대학교 교수	○○○	조경계획
지질	문화재위원	우경식	지질학
	문화재위원	황재하	지질학
	○○대학교 교수	○○○	지질학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저번 국정감사때 제가 천연기념물 산양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조사가 진행중이죠? 다음 달이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 감사 때 확인을 위해 최근 작성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청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산양조사를 4계절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유전자 분석 및 카메라 설치 등 산양개체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관리실태와 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원실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청은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울창한 숲을 형성하여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 1965년 1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강원도를 관리단체로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역사자원 학술조사, 인문지명 연구, 자원조사 연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설악산 내 각종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심도 있게 검토·처리함으로써 천연보호구역을 온전하게 보존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신라왕경사업추진단
담당자	윤진영 사무관, 권택장 연구관, 임경석 사무관
연락처	054-777-6719, 6726, 6730

2. 신라 왕경 복원사업, 발상 바뀌어야

1) 발굴과 정비·복원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나? 예산과 복원사업의 기간을 감안한다면 발굴을 무리하게 마무리 짓고 복원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각 사업은 발굴결과에 연구·고증을 거쳐서 복원을 진행하고 사업 각 단계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신라왕경사업추진단 자문위원회 및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등 발굴이 무리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인데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개념이 충돌하고 있다.

- 세계유산인 ‘월성지구’, ‘황룡사지구’, ‘대릉원 지구’ 등 유산구역과 그 주변의 완충구역(유산구역 주변 100m)은 구분되며,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어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3) 황룡사지의 경우 주변부의 종합발굴이 된 적이 없는데 종합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한다.

- 황룡사 역사문화관 인근에 설치 예정인 주차장은 황룡사지 및 동궁과 월지의 문화재 관람 동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2025년 이후 국립경주박물관 남편에 설치될 통합 주차장 설치 시까지 한시적('17~'25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임시 주차장부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조사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2016-23호)」 제4조(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 및 문화재위원회 ('16.3.9.) 심의를 거쳐,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유적의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복토·성토한 후 한시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4) 월정교 누교는 이해하겠는데 양측의 문루는 대체 근거가 무엇인가?

- 월정교지 발굴결과('84~'87년)를 토대로, 유구 및 유물 분석, 지반조사, 석재 성분조사, 옛 다리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등 “월정교 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05.~'06)”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월정교의 형태와 기능·규모에 적합한 외관을 고려하여 문루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위원회 문루 복원 결정(중층 건립, 정면 5칸×측면 3칸, 정면 17.7m, 측면 9.6m, 높이 14.69m)에 따라(문화재위원회 사적·건축분과 합동위원회 등 5회 검토) 고고학 및 고건축학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문루 복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 8월 31일 워크숍에서 지적사항에 대해 월성 내부 건물, 동궁과 월지 남편 건물지, 황룡사 9층 목탑 등의 장기 검토는 무엇인가? 논란을 피하자는 것 아닌가?

-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계의 충분한 연구·고증이 필요한 건축물 복원은 장기적으로 연구·고증 결과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복원 범위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신라왕경사업추진단 자문위원회 및 관계전문가 자문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전 재 수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법무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사덕 사무관/박관수 사무관
연락처	042-860-9371/042-481-4714

1. 세계 최고추정 금속활자 “증도가자” 훼손 관련

- 금속활자는 청동재질의 활자로 표면부식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충격에 취약하고 현재도 불안정한 상태이며, 분석과정 중 분석장비에 해당 유물을 세팅하면서 유물 취급 부주의로 취약한 부분이 탈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따라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기존 문화재 복원·분석과 관련한 규정 및 지침을 재정비하고 빠른 시일내 유물분석조사매뉴얼을 마련하여 유물 상태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 등 유물 취급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증도가자 훼손에 대한 감사는 자체감사인력 총 7명 중 4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 1명) 및 고려금속활자 문화재지정 조사 분석자문단(5명) 중 2명(보존과학 전공 1명, 부식학 전공 1명)이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감사규정」 제17조 제3항의 기준을 적용 관련자들에 대해 조치(경고)한 사항입니다.
- 이후 우리 청은 중대 사안이나 전문 분야 감사의 경우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인력을 과반수 참여하게 하며 해당 감사 결과 처분 시 외부 감사 인력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정 전문 분야 감사 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감사 전담 부서 분리 및 감사 관련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감사제도 개선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이명선 사무관
연락처	042-481-4821

2. 문화재청-방재시스템, 다양한 시스템 운용 고려 못해

- 1) 영상관제시스템은 조달청 관급자제 품목 중 특정 품목만 선정 유도,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특정 시스템 원천적 배제...명백한 지침 위반, ‘문체부와 사업 유사성/중복성 때문에 타제품 사용 불가’ 터무니 없는 해명만 거듭

- 영상시스템 구축사업에서 특정 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기 설계 승인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약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의 지적을 반영하여 지침 개정을 실시 사업주체인 지자체에 통지 하였습니다.

2) 문체부에서 이관 받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국고보조율이 당초 보다 후퇴하고 시스템 호환이 어려워 제도개선 또는 문체부 재이관 검토가 필요

-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적용은 문체부 40(국비):40(지방):20(자부담), 문화재청 70(국비):30(지방비)로 구분하여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17년도, 문체부에서 이관 받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문체부에서 적용하는 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문체부와 우리 청에서 지원하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사찰 내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동일 목적의 사업이나, 보조율 차이로 형평성 논란에 의한 민원제기 등 사업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율 적용 관련 관계기관의 요청 시에는 재이관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당자	최재혁 사무관
연락처	042-481-4835

3) 국가와 시·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진동 허용기준을 문화재 관련 법령에 마련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진동허용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우리청에서는 현재 문화재 주변 500m 이내에서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 * 조사결과, 문화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21조의2제2항)

- 그러나 관련 전문가의 조사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파진동 허용기준’(진동속도 0.2cm/sec이하) 및 ‘생활진동 규제기준’(진동레벨 60~65 db(v)이하) 등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문화재의 재질과 유형, 그리고 위치, 노후상태 등 각 문화재 특성에 맞는 진동 허용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과학적 연구와 사례분석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문화재보존 진동 허용 기준’(고시 또는 훈령)을 마련하여 지진, 발파 등 진동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당자	정규연 사무관
연락처	042-481-4843

3.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 확대 필요 관련

1) 돌봄사업 대상을 비지정 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등으로 확대해야

- 현재 돌봄대상은 총 6,008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203건, 시도지정문화재 3,594건, 비지정문화재 1,211건입니다.
- 돌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전국의 문화재 수는 약 10,0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문화재 예방관리로 관리의 질적향상과 대규모 보수예산의 효과적 절감, 부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 돌봄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안정적 사업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돌봄사업의 조직과 예산확대 필요

- 2016년 돌봄예산(12,146백만원)에 비해 2017년 돌봄예산(11,539백만원)은 6억여원이 삭감되어 조직확대에 애로가 있으나 돌봄단체의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직업적 위상 확립을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법」 제정 또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금번 경주지진 피해복구 등에서 그 사업효과가 증명된 돌봄사업의 예산확대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지진피해 이후 신속한 문화재 보수관리를 위해서라도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필요

- 현장문화재의 실태파악이나 분석, 유지관리 등이 신속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수행단체를 연결해 줄 브릿지가 필요

- 영남 및 호남권의 지역거점을 마련하여 돌봄사업의 활동여건을 조율하고 정부-지자체-수행단체간 가교역할을 담당할 중심역할 기구(컨트롤 타워)설립 예산을 2017년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이 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재 실태분석, 유지관리 정책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당자	변지현 사무관
연락처	042-481-4968

4.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관리 부적정 관련

1)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용도 외 사용 및 관리·감독 부재

- 전승지원금은 전승자들의 그동안의 전승 공로와 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용 용도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전승과 보유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승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14년부터 매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15년에는 전승지원금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관리·감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 그 결과 그동안 보유단체의 인식 및 집행 실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집행 실적 등이 우수한 보유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전승지원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집행실태 점검 결과 부적절 사례(전용통장 미사용, 용도외 사용, 증빙 서류 미비 등) : ('15년) 총 140건 → ('16년) 총 72건으로 약 50% 감소
-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이행 정도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우수 보유단체에 대한 포상금 차등 지급('16년.11월 예정)
- 우수 사례에 대한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16.12월 예정)

-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 대한 우리 청 소관 법인화 추진을 완료('17.3월 예정)하고, 이에 따라 보유단체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전반사항을 관리·감독하여 종목 전승의 내실화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활용정책과
담당자	박동석 서기관
연락처	042-481-4742

5.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확대 관련

- 1) 문화재청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은 각 지역에서 호응 및 선호도가 높았으며 향유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역문화재 발전 및 지역문화재 활용도 제고, 지역문화 국민향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2017년부터 확대필요
 - 지방 소재 지정문화재 활용사업은 서울에 소재한 궁궐과 종묘에 비해 대상 문화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거주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전통문화향유의 기회에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에 있는 우리의 우수한 문화재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인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방소재 문화재를 궁궐 문화재처럼 품격 있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 서울에 편중된 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입확산과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함과 동시에 전통문화 향유기회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향유기회 확대와 보장으로 풍성한 문화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문화유산 활성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국민향유율 제고를 위하여 예산부처와 ‘생생문화재사업’, ‘향교서원 활용사업’, ‘문화재야행(夜行)’ 사업, ‘전통산사(山寺)활용사업’의 예산증액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니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조 승 래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당자	김영호 사무관
연락처	042-481-4972

1. 문화재청, 문화재 밀집지역 지진 대책 마련해야

1) 경주 지진 발생에 따라 100건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는데 해당 문화재의 복구 진행 상황은 ?

- 우리청에서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20억원과 250여명의 응급복구 인력을 투입하여 문화재와 한옥가구 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 다만, 문화재 수리는 설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행되기 때문에 완전복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재청의 안전 매뉴얼을 검토 했는데, 문화재 특성이나 재해 유형에 따른 상황별 대안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보강하기 바람

- 문화재청에서는 산불, 풍·수해, 지진재난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각각의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운용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 특성 및 대응 체계 등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당자	정 석 사무관
연락처	042-481-3170

3) 현재 문화재 보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급하다고 대충 보수해서는 안 될 것임. 정도를 지켜가며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복구 작업 해 주시기 바람.

- 지진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노후된 담장기와나 지붕기와의 파손으로 이는 지붕에 기와를 고정시키는 기와 아래의 혼합재(알매흙, 홍두깨흙)가 시간이 지나며 접착력, 마찰력 및 내구성 등이 저하되어 충격에 취약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문화재 보수는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원형에 대한 고증을 거쳐 설계를 하고 있으며, 공사 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세계유산팀
담당자	김지홍 사무관
연락처	042-481-3181

2.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관련

1) 일본의 군함도 관련 강제징용 사실 적시를 위한 문화재청의 노력(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

- “일본 메이지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조선인 강제징용 내용 반영과 관련해 문화재청에서는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이행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과보고서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문화재청은 동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 대표단 부대행사로 “세계유산과 해석, 그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해,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 촉구를 위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알렸으며, 이 행사를 이번 11월 외교부와 함께 “세계유산의 해석과 미래가치”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로 확대 개최하여 일본의 세계유산 권고사항 이행 촉구 및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강제징용 내용 반영-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18년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공식 논의될 예정입니다. 해당 위원회까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권고사항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외교부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여 계속해서 일본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